

The National Library Policy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 大會主題講演

國家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張 一 世
圖協專門委員長

1. 國家發展과 圖書館의 관계

國家發展, 즉 國家의 民主的인 發展은 政治的으로
건전한 議會制度의 發展을, 經濟的으로는 資本主義에
바탕을 둔 發展을, 그리고 文化的으로는 個性主義의
發展 등 세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가 綜合的으로 發展할 때 그 國家는
民主的인 國家로서 發展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發展
을 위한 基本的인 發展은 모두 個個人의 知的인 發展
如何에 左右된다.

지난 날 王室圖書館이 國民을 一方的으로 統治하기
위한 知慧를 제공하기 위하여 王族이나 貴族의 專用物
로서 사용되어 왔음은 東西의 歷史가 證明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 個性主義에 바탕을 둔 民主國家는
「國民에 의한, 國民을 위한, 國民의 政治」라는 것을
생각할 때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슬기로운
判斷이 있어야만 民主的인 效果를 얻을 수 있다. 여기
에 教育의 必要性이 強調된다.

그러므로 高度의 民主國家로서 새로운 繁榮을 이룩
하는 나라일수록 高度의 教育水準을 가진 國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現實에서 볼 수 있다.

美國이 그렇고, 英國이 그렇고 또한 佛蘭西가 그러
하다. 다시 말하면 教育水準이 높은 나라일수록 보다
높은 民主國家를 形成하고 있다.

高度의 先進國家들이 教育에 重點을 주는 理由가 바
로 여기에 있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義務教育 年限이
보통 12年으로서 우리 나라의 倍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國家에서는 學校教育만으로
서 教育을 끝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急變하는 社會情勢, 나날이 發展하고 있는 高度의
技術科學 등은 學校教育을 마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
속적으로 自己 스스로를 教育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
고 있다. 教育을 스스로가 계속하지 않았을 때, 이미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게 되어 간다는 사실은 오늘 날

어느 누구도 否認할 수 없다.

學校教育을 받을 수 있는 教育機關에서 떠나 社會의
一員으로 된 이후의 教育을 받을 수 있는 機關이 그들
나라에서 必需的으로 받아드리게 된 理由가 여기에 있
는 것이다.

계속적인 教育, 一生을 통한 教育만이 高度의 民主
主義를 견지하며, 自由와 繁榮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社會教育機關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이 重要
한 機關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Unesco가 1949년에 宣言한 Unesco 公共圖書館憲章
에서 公共圖書館을 「民家의 大學」(Peoples University)
라고 規定짓는 사실은 地域社會 住民들을 위한 社會教
育機關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精確히 判斷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역할을 重要視했기 때문이다. 더우
기 1972년에 改正된 公共圖書館憲章에서는 公共圖書館
을 「教育, 文化, 情報을 위한 民主的인 機關」이라고
喝破함으로써 加一層 公共圖書館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음은 매우 注目할만한 일이다.

改正된 憲章의 緒文에서 Unesco는 「公共圖書館이 情
報 및 教育과 文明에 대한 살아있는 힘이며 平和를 함
양하며 온 人類와 國家間의 理解를 相互 증진시키는
필수적인 機構임을 확신하는 Unesco의 信念을 宣言하
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公共圖書館이 가지는
機能을 明示하는 동시에 民主社會에서의 중요한 位置
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教育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는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義務教育 年限이 6年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學校教育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學校를 떠난 이후의 社會教育이 切實하게 需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社會教育機關은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미약한 상태아래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여간, 위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社會住民들을 위한 民衆의 大學으로서 그들의 生涯를 통한 반려자로서, 그리고 教育機關으로서 必須不可缺한 기관이며, 學術研究圖書館은 深奧한 學問을 연구하는 大學의 心臟部로서, 學校圖書館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基本的인 지식과 人格 涵양을 위한 修練의 中心部로서 그리고 特殊圖書館은 자기 받은 專門分野의 개척과 開發을 위한 센터로서 중요한 存在임은 再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各級 圖書館의 發展與否가 國家의 綜合的인 發展과 直結되는 것으로서 國家發展을 위한 國家的인 施策이 要緊된다.

2. 國家的인 圖書館政策

가. 美國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圖書館政策」이라고 할 때 各級 圖書館을 포함한 포괄적인 政策을 말한다.

그러나 學校圖書館, 大學圖書館 그리고 特殊圖書館 등은 일정한 범위의 對象만을 奉仕하기 위한 도서관이지만 公共圖書館은 奉仕 對象이 온 국민이므로 따라서 國家的인 圖書館政策上으로는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보다 重點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에서 公共圖書館이 가장 발전한 나라의 하나인 美國에서, 온 국민의 知的 向上 만이 전진한 民主社會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公共圖書館 發展을 위한 강력한 國家政策을 수립하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注目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1956년에 制定한 「圖書館奉仕法」이 그 첫째이고, 둘째로는 이 法을 1962년에 改定 公布한 「圖書館奉仕 및 建築法」이 좋은 예이다.

이 두가지 法制定 이후의 美國의 公共圖書館은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文獻을 통하여 이미 우리들이 잘 아는 바이다.

이와 같이 公共圖書館을 위한 國家的인 施策과 더불어 學術研究의 촉진을 위하여 1965년에 制定한 高等教育法을 看過할 수는 없다. 이 法은 學術研究를 위하여 高等教育機關의 圖書館이 지닌 역할을 인식하고 그러한 기관의 圖書館의 質的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法이다. 이 法이 시행된 이후 大學圖書館에 대한 國家的인 支援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學術活動에 크나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高等教育法 또는 圖書館奉仕 및 建築法 등은 國家 전체적인, 다시 말하면 종합적인 圖書館施策은 아니다. 國家 전체적인 균등한 發展을 위하여 보다 종합적인 시책이 요망되었다.

이런 점에서 美國圖書館諮問委員會가 大統領 직속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大統領 직속인 이 委員會는 “將來의 우리 나라(美國)의 圖書館이 하여야 할 역할과 그의 적절함의 可否를 評價”하고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절할 圖書館 奉仕를 제공할 수 있는 方向으로 進行的인 前進를 가져 오도록”하는 구체적인 建議 및 勸告案을 大統領에게 제출하는 使命을 가진 것이다.

이와 같이 國家 전체의 圖書館奉仕를 위한 조사 연구 委員會가 大統領 직속으로 설치되고, 大統領에게 직접 建議나 勸告案을 제출토록 하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美國에서 圖書館의 역할을 重要視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 委員會가 大統領에게 제출한 여러 가지의 建議와 勸告事項에서 특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國家圖書館 및 情報科學委員會」를 常設委員會로 설치하도록 建議한 사실이다.

즉, 大統領諮問委員會는 上述한 바 大統領에게 建議와 勸告를 제출함으로써 그의 機能이 정지되는, 말하자면 1年정도의 時限을 가진 委員會이지만, 이 委員會에서 建議한 圖書館 및 情報科學委員會는 恒久的인 常設機構로서 설치할 것을 勸告하였고 이 委員會가 설치되면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圖書館 및 情報科學의 發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建議가 大統領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은 물론 이거니와 1970年 7月 20日字로 議會에서 通過됨으로써 정식으로 「國家圖書館 및 情報科學委員會」(Nationa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mmittee)가 發足하게 되었다.

이것은 圖書館 및 情報科學의 發展을 위한 획기적인 國家政策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同法 第2條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圖書館 및 情報科學이 「國家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要緊」하다는 것을 國家的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委員會는 14名의 委員으로 구성되는데, 반드시 圖書館 專門家가 5名, 情報科學 專門家 1名 이상이어야 하며, 그 밖의 委員들로 教育과 圖書館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어야 한다고 法에 明示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 얼마나 斯界의 專門家들의 權威를 인정해 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委員會의 주요한 機能은 國家的인 圖書館政策을 수립하고 監督하는 절대적인 權限을 委任받고 있다.

나. 英國의 경우

세계에서 公共圖書館을 처음으로 制定한 國家가 英國이다. 1850년에 제정된 世界 최초의 이 圖書館法은

여러 점에서 오늘 날의 우리 나라 圖書館法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 후 英國에서는 여러 차례의 公共圖書館法의 改正이 이루어졌으나 드디어 1964년에 이르러, 역시 세계 최초로 가장 理想的인 公共圖書館法으로 發展시켰다.

이 法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地方自治團體는 義務의으로 그 地域社會 住民을 위한 公共圖書館을 반드시 設置 運營하도록 한 점이다. 이밖에 國務總理가 모든 公共圖書館 運營에 대한 監督을 한다든지, 시청각자료를 포함한 도서관자료의 具備을 역시 義務化 시켰다든지, 또는 나아가서 地域의으로 公共圖書館 相互間의 協力を 권장하였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온 國民에 대한 理想的인 奉仕를 위한 代辦한 發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 法의 施行에 따라 오늘 날 5,500萬 英國國民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公共圖書館奉仕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새삼 놀랄 뿐이다.

두번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英國國家中央圖書館을 새로이 설치한 점이다.

1972년에 創立된 英國國家中央圖書館法에 따라 既存 하던 여러 國立圖書館을 설치한 것이다.

이 措置는 많은 人員, 施設, 資料 및 經費의 증부를 꾀하고 보다 效率的이고 강력한 圖書館 奉仕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韓貨로 400億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방대한 擘사업은 1980年頃에 完成될 예정인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圖書館專門家를 포함한 理事會에 의하여 이 도서관을 運營토록 한 점이다.

理事會의 理事는 國務總理가 선정하되, 그 중 한명은 英國國王이 직접 지명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國家中央圖書館의 機能이 國家發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英國이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3. 우리 나라의 圖書館政策

가. 지금까지의 圖書館政策

우리 나라에 과연 國家的인 圖書館政策이라 할만한 政策이 있었는가를 물이켜 본다면 그럴만한 政策이 없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대로 政策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찾아 본다면 圖書館法이 制定된 1963年을 前後한 時期에 다소나마 政策다운 政策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圖書館法 制定경위를 본다면 國家에서 政策的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圖書館法을 制定

한 것보다는 圖書館人들의 즐거찬 노력의 結실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하여간 이 時期를 계기로 하여 계속 發展했어야 할 우리 나라의 圖書館界는 政策主案者들의 지식의 고갈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말았다.

비록 圖書館法이 불완전한 法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圖書館史에 있어서 중요한 轉換點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否認할 수는 없으며, 이 法에 이은 同法 施行令의 制定과 施行規則의 制定 등 일련의 相關된 法令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앞으로의 發展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 이후의 國家的인 政策이라고 불리울만한 중요한 일은 國立中央圖書館이 중심이 되어 열심히 추진하였던 「公共圖書館擴充5年計劃」이라 하겠다.

우리가 바랄뿐만 아니라 國家的으로도 바람직한 政策은 各級 圖書館을 포괄한 종합적인 圖書館發展計劃이지만, 그렇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가장 뒤 떨어진 그리고 가장 發展되어야 할 公共圖書館의 擴充을 위한 이 계획이 매우 미약하나마 1968年을 起點으로 하여 5年 계획으로 政府에 의하여 政策的으로 채택하였을 때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期待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結論부터 이야기 한다면, 이 計劃은 失敗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 계획은 5次年度가 끝나기도 전에 계획 자체가 中斷됨으로써 公共圖書館 發展도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완전히 失敗하고 말았으며, 그 후 公共圖書館 發展에 대한 政府의 政策的인 고려는 현재로서는 전연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더우기 근래에의 國立中央圖書館에 대한 처사라든지 國會圖書館에 대한 처사를 볼 때 政策이라기 보다 한심하기 한이 없다고 밖에 表現할 수가 없다. 즉 1974年 12월에 國立中央圖書館으로서의 理想的인 장소에서 交通이 불편하고 이용하기 힘든 舊 어린이會館으로 移轉 開館하였을 당시 우리들 圖書館人들은 이와 같은 처사를 극구 반대하였고, 여러 言論機關에서도 우리들의 主張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우리들 主張에 全的으로 同調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主張은 貫徹되지 못하였으며, 지난 9月 開會한 國會議事堂의 地下室로 옮겨진 國會圖書館의 현실은 과연 우리 나라에 圖書館政策이란 存在하고 있는가를 疑心하게끔 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 우리 나라에는 아직 기대할 만한 國家的인 圖書館政策이란 存在하지 못하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1963年이나 1968年 당시 보다도 더 後退한 감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 將來의 政策方向

外國과 우리 나라의 圖書館政策을 비교하여 볼 때 우리들은 그저 失望을 금할 수 없을 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失意에 빠져 있을 수 만은 없는 것이다.

그 보다는 우리 들은 냉철하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보고, 무엇이 우리 나라의 圖書館政策을 이토록 만들었는가 하는 原因을 究明하고 앞으로의 發展을 위한 加一層의 노력을 하여야 할 줄로 생각한다.

여기서 本人은 우선 우리들 자신들이 反省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즉 우리들 圖書館인들이 무엇을 지난날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本人은 첫째로 우리들 圖書館인들의 力量을 總集中하여 모든 方法을 동원하여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중요성을 政府 當局에게 인식시키는 운동을 展開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政府의 政策立案者들이 圖書館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면 圖書館發展을 위하여 所要되는 金額문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經濟는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였다. 1960年代初에는 國民 1人當 所得이 불과 수십弗에 지나지 않았으나 오늘 날 500餘弗로 증가하였다. 世界에서도 몇몇가는 大造船所가 우리의 손으로 建設되었으며, 100수십億원이 소요된 嶺東高速道路가 1年만에 완성되는가 하면, 100수십億원을 드려 東洋 最大規模인 國會議事堂이 세워질 정도로 우리 나라의 經濟力이 伸張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만일 國家가 圖書館의 역할을 인식한다면 언제라도 중점적으로 圖書館을 開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 圖書館人들은 總力を 집중하여 政策 立案者들이 圖書館이 國家發展을 위해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社會教育機關임을 인식시키도록 모든 努力을 다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圖書館界가 수년전 부터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大會를 우리 나라로 誘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本人도 그 중의 한 사람이지만 이 IFLA大會를 우리 나라로 誘致하고자 노력한 理由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世界各國의 圖書館專門家 5~600名을 우리 나라로 오게 하고, 그들 입으로부터 圖書館의 중요성을 직접 듣도록 함으로써 政府當局이 圖書館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 나라 建國以來로 처음있는 이러한 大規模의 國際會議을 우리 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메스컴을 통하여 圖書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대중에게 圖書館의 重要性을 인식시켜 간접적으로 政府當局에 대하여 圖書館의 설치를

요망토록 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政府 當局에서 外國에서의 경향에 비추어 國家의인 圖書館政策을 종합적으로 연구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機構로서 圖書館 專門家들의 衆智를 모을 수 있는 圖書館諮問委員會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미 몇가지의 外國의 事例를 앞에서 지적하였으므로 더 이상 중복되는 이야기를 피하겠거니와, 이 方法만이 專門家들의 衆智를 모아 國家政策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最善의 방법이다.

만일 이러한 諮問委員會가 이미 설치되었던들 公共 圖書館擴充5年計劃이 이처럼 失敗에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國立中央圖書館이 불편하고 부적당한 어린이會館 자리로 옮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끝으로 提案하고자 하는 것은 關係部處에 圖書館 專擔部署를 설치하고, 圖書館專門家로 하여금 그 직분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는 일이다.

여러 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圖書館事業이란 하루이틀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1年 2年에 끝나는 일도 아니다. 國家가 存在하는 한 圖書館事業도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다.

특히 圖書館事業은 6年동안 계속되는 初等教育이나, 4年동안 계속되는 大學教育 등과는 달라 一生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社會教育機關임을 생각할 때 이 방대한 事業을 위한 專擔部署가 없다는 것은 論理的으로도 不當하겠거니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과 같은 우리 나라의 圖書館政策으로서 圖書館의 發展을 期待한다는 것은 奇蹟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本人은 이 大會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要求事項을 羅列코자 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지적한 최소한도의 提案이 國家의 政策으로서 反影되기를 圖書館인의 한 사람으로서 強力히 關係當局에 要求하는 바이다. 政府當局의 진지한 考慮있기를 再三 간청하면서 全國에서 모이신 여러 圖書館人들의 계속적인 奉仕와 健闘을 祈願하는 바이다.

● 圖書館發展에 대한 提案을 바랍니다.

本協會는 本會運營과 圖書館發展을 위한 여러 가지 意見이나 提案을 바라고 있습니다.

提出된 意見이나 提案은 도협월보에 掲載하여 널리 알림은 물론 이를 研究하여 積極 反映하게 될 것입니다.